

##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2. 23.

### 하동군의회의회장 강대선

1. 조례명: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지급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신청안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마.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바.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jina927@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 하동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급내용)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신청안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

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제6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만하여 지급한다.





